

# 인지세 납부 안내(아파트, 발코니, 유상옵션)

## ■ 인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 및 방법

- ◎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◎ 납부기한·방법 : 분양계약(전매포함)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- \* 관련법령 : 인지세법 제3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## ■ 인지세 안내

구분	세액구간	세액	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7차 센트럴파크 인지세 대상 타입		
			공급계약서	발코니확장계약서	유상옵션계약서
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	1,000만원 초과~3,000만원 이하	2만원	-	-	74/84A/84B
	3,000만원 초과~5,000만원 이하	4만원	-	-	
	5,000만원 초과~1억원 이하	7만원	-	-	-
	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	15만원	74/84A/84B	-	-
	10억원 초과	35만원	-	-	-

\* 전자수입인지는 구매 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. \* 인지세 전자수입인지(종이문서용)는 부동산 등기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.

※ 계약시 아파트, 옵션 각 1부씩 필요

## 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

1 해당 홈페이지 접속 → 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 「전자수입인지」 검색

###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



### 4 구매 - 납부정보입력

- 1 용도 : 인지세 납부
- 2 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- 3 금액 : 2만원~30만원
- 4 건수 : 1건
- 5 확인 및 결제

### 3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로그인 후 구매



### 5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, 테스트출력 요망)



■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.